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한다.
-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 1)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2)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립 생활을 도우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어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 1)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 하되, 납부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3)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납부 시는 본인 부담금 통장으로 이체시킨다.)
- 4)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수가를 확인하여 부담하는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 5)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9%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6)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 14조)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7) 노인 장기요양 급여종류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금에 따른 월 이용료 부담액은 ※ 별표와 같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8)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별표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 기준(2025.01.01)

◆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원) 및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등 급	월 한도액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희귀난청,만성질환자)/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
			9%	6%	
장기요양 1등급	2,069,900	310,480	186,280	124,190	면제
장기요양 2등급	1,869,600	280,430	168,260	112,170	
장기요양 3등급	1,455,800	211,840	127,100	84,730	
장기요양 4등급	1,341,800	195,550	117,330	78,220	
장기요양 5등급	1,151,600	162,960	97,770	65,180	
등외 (인지등급)	643,700	96,550	57,900	38,62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서비스 시 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시 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9%	6%			15%	9%	6%
30분 이상	16,630	2,490	1,490	990	150분 이상	48,250	7,230	4,340	3,250
60분 이상	24,120	3,610	2,170	1,440	180분 이상	54,320	8,140	4,880	3,250
90분 이상	32,510	4,870	2,920	1,950	210분 이상	60,530	9,070	5,440	3,630
120분 이상	41,380	6,200	3,720	2,480	240분 이상	66,770	10,100	6,000	4,000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9%	6%
차량 미이용	48,690	7,304	4,382	2,921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	77,970	11,696	7,017	4,678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9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4. 이용자의 구비서류

-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 2) 개인별 장기이용계약서 사본 1부
- 3) 복지 용구 급여확인서 1부 (선택사항)
- 4)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이용자 등에 대한 기관의 의무

-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항목을 지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무하도록 교육한다.
 - 두발 신체 및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 (매월 회의 시 확인한다.)
 - 근무에 적합한 단정하고 간편한 복장에 앞치마를 착용한다.
 -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등 무례한 행위를 금하며 친절함을 유지 한다.
 -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
 - 이용자와 계약한 일정 및 급여제공시간 등을 준수한다.
 - 급여제공 기록지에 서비스제공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2) 위와 같은 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실시하여 신규요양보호사 또는 재배치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
- 3) 신규 요양보호사에게 노인인권 보호지침, 응급조치사항, 비상연락망 등을 교육 시킨다.
- 4)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 한다.
- 5) 당월 급여제공 기록지를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
- 6) 익월 급여계약 통보서를 보호자 또는 전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을 알 수 있게 한다(이용자의 식탁, 냉장고, 벽 등에 붙여 게시하게 함)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1)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가)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제공시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의무
- 나)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라)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 의무
- 바)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 비품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수급자 실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종사자의 물품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무
-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할 때(사적인 일)
 -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시 (폭언, 폭력, 성희롱, 성폭행 등).
-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